

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
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,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필요

- 이에 따라,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인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업무 전반
-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위탁시설 및 기간

시설명	소재지	면적	종사자	위탁기간
울산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	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, 3층	330㎡	15명	2025. 1. 1.~2029. 12. 31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·결정

사. 2024년 소요예산: 928,086천원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검토내용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○ 정신질환 예방·관리, 재활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절함.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내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하며,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

	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.
③ 경제적 효율성	○ 직접 운영 시, 자격을 갖춘 직원과 수행 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추가 예산 필요함. ○ 민간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, 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인력관리 및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.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정신건강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과 전문지식, 기술 등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함.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「정신건강사업안내」에 따른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사례시스템으로 대상자 등록관리, 프로그램 운영, 상담, 교육 등 사업 성과 측정이 용이하며, 월별, 분기별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 가능함.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련 법령 및 지침, 위수탁협약서, 운영규정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,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, 수탁기관 지도·감독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함.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가능함.

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 의무 사무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전문적이며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임.
-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운영방식 활용이 업무의 전문성과 비용절감 등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위탁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협약 체결: 11월~12월

4. 참고사항

관계법령	내용
<p>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'정신건강복지법')」</p>	<p>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</p> <p>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</p>

	<p>·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</p> <p>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4. 23.></p>
<p>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p>	<p>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정신건강증진시설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 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</p> <p>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/p>

<p>관한 조례」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	<p>제6조(승인 및 동의)</p> <p>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 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21.10.25.>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10.25.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